
2025년 노·사 합동 워크숍

[안건별 논의과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소속병원 진료기능 강화 방안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산재 근로자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와 재활을 제공하고, 직업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 공공병원

소속병원의 진료기능 및 정책사업 목적에 따른 운영 방안

- 소속병원 진료기능 강화 및 정책사업 추진 방안
 - 재활지원센터 직제 변경으로 정책사업과 진료 기능 분리
(장비 및 의료진 분리 운영 방안)

소속병원 정책사업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업무관련성특별진찰은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전문 조사 절차
주로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 질환, 소음성 난청 등 비사고성 질병에 적용되며,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행

주요 절차

대상 선정 : 근골격계 질환(허리디스크, 어깨회전근개파열 등), 뇌심혈관 질환, 소음성 난청 등 특정 질병에 대해 신청 시 진행

진찰 내용

직업력 조사: 업무 내용, 신체부담업무(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 등)의 구체적 내용과 빈도, 작업시간 등을 확인

현장조사: 사업장 방문을 통해 실제 작업 환경을 확인하고, 재해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동료 근로자의 시연 참고

검사 및 평가: MRI, 청력검사 등 의학적 검사와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서 발급 포함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6~8개월이 소요되며, 신청 순서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장해전문심사

장해전문심사란?

업무상 부상·질병의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아 공단 직영병원(2형 심사기관)에 '장해전문심사'가 의뢰된 경우, 관련 진료과 전문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장해심사위원회에서 장해상태를 진단하는 제도.

장해전문심사 대상(2형)

- (신경) 팔(손가락)부위 신경손상 등으로 인한 파지력 장해
- (척추) 척주의 변형(추체외골절변형장해 포함), 신경근 장해, 척수 장해
- (팔·손가락·다리·발가락) 12급 이상의 관절기능 장해, 화상으로 인한 관절운동기능 장해와 동시에 남은 흉터 장해, 무릎의 동요관절 장해

절차

관할지사에서 상기 장해전문심사 대상에 해당하여 공단 직영병원에 심사를 의뢰하면 산재근로자는 장해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사를 받음

장해전문심사 절차

장해전문심사 절차	
1	(산재근로자) 장해급여청구서 관할지사 제출
2	(관할지사) 공단 직영병원으로 장해전문심사 의뢰
3	(직영병원) 산재근로자 방문 일정 협의 및 장해전문심사 안내
4	(직영병원) 장해전문심사 실시 후 관할지사로 결과 회신
5	(관할지사) 산재근로자에게 장해등급 결과 통보

□ 급성기 재활치료(승인전 치료)

업무상 재해로 그 증세가 위독하거나 향후 치료에 지장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산재승인 전이라도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공단 직영병원에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를 실시하는 기간에는 치료비 부담 없이 재활치료 가능하며, 향후 산재 승인 후 본인부담금 청구 등의 절차가 없습니다.

□ 재활특진

재활특진이란?

의료기관 변경 없이 공단 직영병원 등 재활인증의료기관에서 전문재활치료 필요성·효과성 판단을 위한 진료·평가·검사 등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특별진찰 서비스

다차원 평가 및 검사

통증, 관절가동범위, 근력에 대한 검사를 통해 근골격계 및 중추신경계 신체기능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검사, 영상검사(MRI·CT·X-ray)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다각적으로 진단

다학제 재활 통합진료 및 재활종합계획 수립

필요에 따라 2인 이상의 서로 다른 전문과목 의사와 산재관리간호사가 대면진료를 통해 환자의 상병상태를 진단합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주도 하에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재활 전문 의료진 4인 이상이 각종 검사결과를 반영하여 재활종합계획 수립

1:1 전문재활치료

공단 직영병원에서는 전문재활치료의 효과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특진기간에 물리·작업치료사의 1:1 전문재활치료 제공

절차

관할지사에 재활특진을 요청하면 공단 직영병원에서 특진을 받을 수 있음.

재활특진 절차	
1	(산재근로자) 관할지사에 재활특진 요청(재활특진 의료기관 선택)
2	(관할지사) 재활특진 의료기관으로 재활특진 의뢰
3	(재활특진 의료기관) 재활의학과 진료·평가·검사 등 실시
4	(재활특진 의료기관) 전문재활치료 필요성 판단 및 특진소견서 발급
5	(산재근로자) 특진 종료 후 의료기관 변경요양 여부 결정

□ 직장복귀 지원 특진

직장복귀지원 특진이란?

직무에 복귀하려는 산재근로자의 직무분석,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안정적인 직장복귀를 위한 직업복귀소견서를 발급해드리는 특별진찰 서비스

직무분석

작업자세, 사용 공구 종류, 생산품, 중량물 취급 등 직무내용을 파악하고, 과거 직력, 희망 직업복귀유형 등 산재근로자의 직무를 종합적으로 분석

직업능력평가 및 직업복귀소견서

표준화된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신체기능, 모의작업 동작·작업자세, 직업복귀 준비도 등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직업복귀소견서 발급.

작업능력강화 훈련

직무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변경 또는 병행진료를 통해 직무에 필요한 신체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술을 훈련하는 직무 맞춤 신체기능향상훈련, 모의작업 훈련 실시

(신체기능향상 훈련) 근력, 유연성, 민첩성과 같은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신체적 능력을 강화시키는 훈련

(모의작업 훈련) 산재근로자가 직업 복귀 후 수행하여야 할 특정 작업을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훈련하여 근로자의 직무 적응력을 높이는 훈련

대상자

원직장(원직무, 타직무) 및 타직장(원직무) 복귀를 희망하고, 신청서식이 제출된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특진 절차

1	(사업주)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소견서 발급 희망 선택 ※ 타직장 원직무 복귀 희망 시 산재근로자가 '직업복귀소견서 발급 신청서' 제출
2	(관할지사) 공단 직영병원에 특진 의뢰
3	(직영병원) 직업능력평가 후 직업복귀소견서 발급 ※ 필요 시 의료기관 변경·병행진료를 통해 작업능력강화 훈련(신체기능향상 훈련, 모의작업 훈련) 실시
4	(관할지사) 사업주 및 산재근로자에게 직업복귀소견서 제공

□ 의사 채용의 어려움 원인

① 낮은 보수 수준

- 민간병원 및 대학병원에 비해 연봉이 낮고 성과급이 제한적임.
- 공공기관 총인건비 통제로 인해 유연한 임금 책정이 어려움.

② 근무환경과 업무부담

- 진료 업무 외에 산재병원 특성에 따른 행정적인 업무, 환자의 민원 부담

③ 전문성과 경력기회 부족

- 의료진에 대한 교육·연구 인프라가 부족하고 발전적이지 못함.
- 학문적 경력을 쌓기 어렵고, 정체된 느낌으로 동기부여 결여.

④ 지역 의료환경 문제

- 대부분의 산재병원이 수도권 외 지역(강원권 등)에 위치하여 기피.

⑤ 공공기관의 경직된 채용제도

- 공개채용, 정원제한, 계약조건 등으로 인해 탄력적 채용이 어려움.
- 민간병원은 유능한 의사영입은 원장의 능력이라고 함.

□ 의사 채용을 위한 개선방안

- 성과급 및 특수업무 수당 확대 (산재 특화 업무 반영).
- 총인건비 의사인건비 제외로 임금 체계 유연성 확보
- 의사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동기부여
- 가족 동반 비연고 이주 시 기숙사·자녀 교육 인프라 확보.
- 지방 근무 유인을 위한 지역특화 인센티브 제공.
- [전문성 및 경력 개발] 의사 대상 학술 활동 지원 및 컨퍼런스 참가비 등 지원.
- [홍보 및 인식 개선] 산재환자 전문치료의 사회적 가치 강조.

- 의료사업본부의 역할과 기능 - 공단과 병원 조직간의 갈등?
- 진폐환자의 감소에 따른 산재병원(태백, 정선, 동해)의 역할과 기능 조정은?
- 산재병원과 케어센터의 연계시스템 - 2개 밖에 없는데...
- 전체 산재의료 전달체계 속에서의 부속의원(서울, 대전, 광주) 체계 구축?
- 울산산재병원 신축 - 산재의료의 Needs에 맞춰서?

지역 필수의료 책임지는 포괄2차 종합병원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이어, 지역에서는 필수의료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28차례 수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요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는 지원사업 선정평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포괄 2차 종합병원 175개소를 선정하였다. ▲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 지역응급의료 기관 이상 지정, ▲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수 350개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164개소를 선정하고, 진료권 내 지정요건을 **하여 지역 내 필수 의료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다.

【 추진 방향 】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환·증상에 대한 포괄적 진료역량을 확충한다. 지역 주민이 응급상황에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응급 진료도 강화해나간다.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포괄 2차 종합병원-지역 병·의원 간 진료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보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새로운 의료·공급 이용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립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 주민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아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또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병원에는 적정 보상체계를 적용하여 전체 2차 병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

< 포괄 2차 종합병원 기능 강화 사례(예시) >

① 포괄적 진료역량 제고 및 필수 진료 제공

- **【A병원】** 심뇌혈관센터와 암 진료협력기관 신규 지정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 지역 내 심뇌응급환자와 암 치료 역량 강화

⇒ ▲ 환자 수용률 증가, ▲ 지역 내 포괄적 의료 접근성 강화 등 기능 수행

② 지역 중심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체계 구축

- **【B병원】** 일부 병·의원과의 서면의료로만 운영하였으나,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도입하고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 계획제출

⇒ ▲ 지역 내 의료 연계 기능 강화, ▲ 지역 병·의원 간 연계협력체계 확대

【 지원내용 】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기능 강화 지원과 기능혁신에 대한 성과지원금 등으로 **3년간 2.1조 원(연간 7천억 원)** 투자할 계획이다.

① 중등증 및 일정 수준 이상의 중증 진료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한다.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동하여 등급별로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여 1~2등급은 일당 15만 원, 3등급 9만 원, 4등급은 3만 원 가산하여 연 1,700억 원을 투자한다.

②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시행된 응급수술(KTAS 1~3등급 환자 대상)에 대해 가산율을 인상한다.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가산하여 연 1,100억 원을 지원한다.

③ 중증·응급환자 등 24시간 진료기능 유지 위해 응급실 인력 당직비용 지원. 운영계획 및 당직 현황을 확인하여 연 2,000억 원을 병원 지원.

④ 포괄 2차 종합병원의 기능혁신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 참여 기관의 ▲적정진료 집중 수준, ▲지역 의료문제 해결, ▲진료협력체계 구축 실적 등을 평가하여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 (성과지표 예시) ▲진료과목 수 ▲응급환자 수용률, ▲진료의뢰·회송 등 협력 성과 등

【 향후 계획 】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선정기관들을 대상으로 7월 1일(화)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기관들을 관리하고 매년 참여 병원을 선정하여 지역 2차 병원의 전반적 질 향상도 유도할 계획.

구분	요건 내용
선정기준	1. 급성기병원 인증 2.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3. 수술·시술 350종 이상
예비지정	1.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필수 2. 급성기 인증 또는 300종 시술 이상 3. 2년 내 정식요건 충족 계획
선정 방식	공모 → 서면심사 → 자문단 평가
지원	3년·2조 1천억 원 규모, -연간 700억 / 175개 병원 / 병원별 40억원 내외 지급

○ 소속병원이 선정되면 좋은 점

1. 재정 강화

중환자실 확장·응급실 운영 등 인프라 투자 비용 보전 가능

2. 진료 역량 향상

인센티브 기반으로 응급·중증 진료 기능 강화

3. 지역 공공의료 기여

지역 필수의료 제공 역할이 부각되고, 보건당국과 협력 관계 발전

4. 신뢰도 및 네트워크 확장

지역 병·의원 및 상급종합병원과의 협력 확대 가능

5. 성과 기반 보상 체계 진입

효율성 및 지역 공헌도가 높은 병원에 대해 금전·평가 혜택 제공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보건복지부)

○ 도입 배경

-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성질환 증가 등으로 재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시기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한 조기 사회복귀 체계는 미흡
- 기능회복 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필요*
- * 「장애인 건강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17.12 시행)

○ 목적

- 발병·수술 후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여 조기에 일상생활 복귀를 유도하고, 지역사회로 연계
- 일정요건을 갖춘 병원을 지정하여 수술·처치 후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 재활치료가 가능토록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회복기 재활 대상 환자(표 현행화)

수술 등 치료 후 기능회복 시기에 있는 환자로서, 기능적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일상생활로 복귀가 필요한 환자(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대상 질환	대상환자 구성 기준	
	입원시기	종료일
(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발병 또는 수술 후 90일내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척수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단일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내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
(다발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로 이 경우 상지는 제외한다.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양측 슬관절치환술(단측 또는 양측이 복잡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첫 번째 수술일로부터 30일내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
하지부위 절단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비사용 증후군*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재활손상대분류(KRIC, Korean Rehabilitation Impairment Category)로 분류되지 않은 질병으로, 급성질환 및 수술로 인해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로 재활이 필요한 환자

지정평가 절차

3년마다 평가 후 지정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선정시 좋은점

구분	주요 내용
병원 측 장점	- 재활환자 지속 유입으로 입원율 및 수익 안정화 - 회복기 재활 수가 적용으로 수익성 개선 -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으로 병원 신뢰도 및 브랜드 강화 - 상급병원 및 지역 의료기관과 전원체계 연계
환자 및 지역사회 장점	- 급성기 후 골든타임 내 집중 재활치료 가능 - 지역 내 치료 연속성 확보, 가족 간병 부담 경감 - 전문 인력(의사·치료사·사회복지사 등) - 다학제 팀 접근- 기능 회복률 향상 및 조기 사회복귀 가능
보건의료 정책 장점	- 급성기-회복기-만성기의 단계별 치료체계 정착 - 요양병원 쏠림 완화 및 병상 과밀 해소 -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운영 가능
기타 기대효과	-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연계 기반 확보 - 향후 재활 인프라 중심의 정책 지원 가능성 확대

□ 산재의료의 과제 (주영수/전,국립중앙의료원장)

1) 민간 지정의료기관 주도의 산재의료체계 - 전달체계 구축

- 산재환자의 90%는 민간 지정의료기관이 담당. 산재병원은 전체의 10% 정도를 담당 (* 외상 환자의 90%이상이 민간 지정의료기관을 이용)
- 현재의 산재병원은, 산재환자 최초치료에서부터 재활 및 직업복귀로 이어지는 커다란 흐름상에서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주로 산재환자의 재요양 담당.
- 5,600여개의 지정의료기관을 재편(엄격한 질관리를 통한 선별)하고, 지역별 산재병원(광역거점재활병원)을 중심으로 전달체계 구축.
- 급성기치료-재활치료-요양서비스(요양병원, 요양시설-케어센터 등)가 긴밀하게 연결되는 전달체계 구축.

2) 산재병원 구조(및 기능)의 문제 - 급성기 진료기능 강화

- 독일 산재병원들의 경우는 '외상외과(Traumatology), 수부외과(Hand surgery), 척추외과(Spinal surgery), 화상외과(Burn center)'의 4개 기본과를 골간으로 해서, 지역의 요구도에 따라서 꼭 필요한 진료부서들을 추가하는 방식을 채택
- UKB(Unfall-Krankenhaus Berlin) 경우는, 4개의 기본과 외에 지역적 요구에 기반하여 '일반내과, 심장내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두경부외과, 신경과(뇌졸중 진료)' 등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음
- 사고환자 중심의 급성기 진료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규모 있는 공단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는, 환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별도의 외래 클리닉(일종의 branch)을 개설하고, 필요시 해당지역 산재병원(직영병원)과 연계(refer, transfer)하도록 하면...

3) 직업 및 사회재활서비스 제공체계 강화

- 산재병원 내 재활센터 설치를 통해 예전에 비하여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 직업 및 사회재활서비스 제공체계는 부족하므로 이와 관련된 **병원내부와 외부**에 시스템 구축필요.

4) (정책) 연구기능의 보강

-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원', '재활공학연구소', '근로복지연구원'이 운영 중에 있음.
- 신설보다는 기존의 연구기능을 보강함으로써 개선.

산재 의료전달체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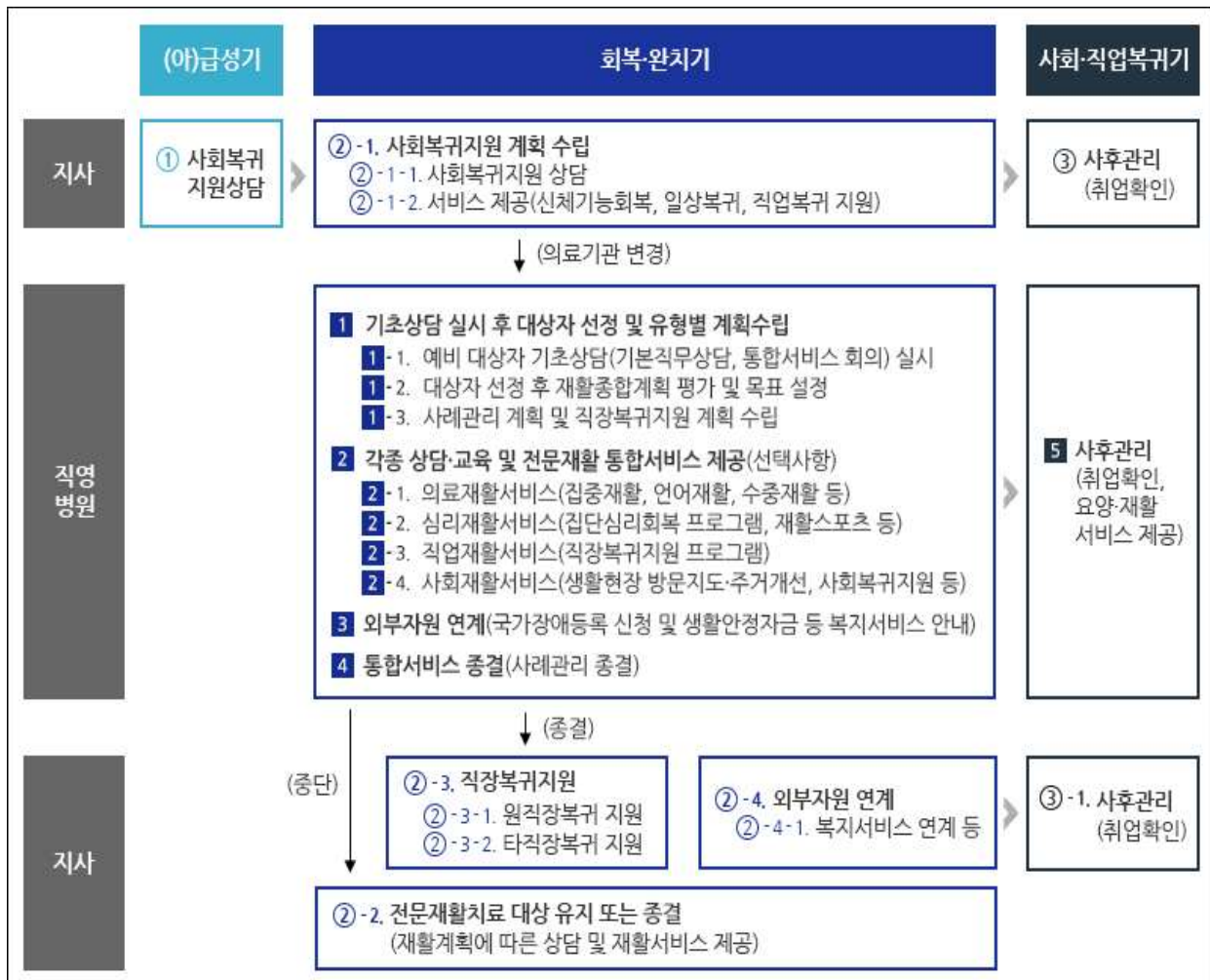
산재 보험자 병원의 역할을 위한 산재 의료전달체계 방안

○ 산재의료 전달체계 추진계획 및 방안

- 보건복지부 1, 2차 의료전달체계 발표
- 산재 의료전달체계 부재**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5장 위탁병원 지정 및 운영

〈 전문재활 통합서비스 제공 MAP 〉



보훈병원 vs 산재병원

○ 운영현황 비교

구분	보훈병원	산재병원
운영주체	국가보훈부 산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6개 보훈병원 + 1개 요양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중앙보훈요양원)	11개 산재병원 (인천, 안산, 대전, 대구, 창원, 순천, 동해, 정선, 태백, 경기요양, 태백요양)
위탁/지정병원	905개(25.07.01기준)	약 6,100여 개소 (산재지정의료기관) 일부 전문재활, 화상치료 등 분야별 위탁 병원 운영 (정확한 수는 비공개)
인증병원	보훈병원 자체 인증제 운영 (2020년부터)	산재재활인증병원: 200여개소

○ 위탁병원 유형별 진료체계

유형	지정 위탁병원	응급 위탁병원
목적	접근성 낮은 지역 보훈대상자 진료	야간·휴일 등 긴급상황에서 진료 보장
진료절차	보훈병원/보훈지청의 위탁의뢰서 발급 → 지정 병원에서 진료	보훈병원 방문 없이 응급 진료 → 사후 보훈병원 또는 지청에 신고 및 정산
사전 절차	대상자 등록 및 의뢰 필요	절차 없이 응급실 방문 가능
적용 질환	외래/입원 진료 포함한 일반 질환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 (예: 뇌출혈, 심근경색 등)
진료비 처리	보훈처 부담 (의뢰범위 내)	사후 보훈청 정산 (응급 진료 범위만 인정)
대표 예시	지정 병원 리스트(지역별 상이)	전국 주요 종합병원 응급실

□ 산재병원 > 산재의료기관 지정 법적근거

○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27., 2010. 5. 20., 2010. 6. 4., 2015. 5. 18.>

1.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중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 보훈병원 > 위탁병원 지정 법적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유공자법)

제20조(의료지원)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게 할 수 있다.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과 진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진료의 위탁)

- ① 보훈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 ② 위탁진료기관의 지정, 진료범위,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진료 위탁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위탁병원의 지정기준, 신청절차, 의료기관 유형, 계약기간 및 평가 등 세부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름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5장 위탁병원의 지정 및 운영

제29조(지정기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탁병원으로 지정한다.

1. 국·공립병원 및 이에 준하는 의료기관(이하 “공공의료기관”이라 한다)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다만, 한의원, 조산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의료법」 제3조의5에 해당하는 전문병원은 제외한다.
3. 공공의료기관 또는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③ 제2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은 위탁병원 지정대상 지역에서 제외 한다. 다만, 보훈병원의 진료적체 등으로 위탁병원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위탁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제외하고,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탁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1조(위탁병원 공개모집)

① 보훈(지)청장은 위탁병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다만, 재공개 모집이나 교체로 인한 진료공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15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공개모집할 수 있다.

○ 보훈의료전달체계

● 1차 위탁병원

- 경미한 질환에 대한 간단한 처치, 약 처방 등 기초진료 수행

● 2차 지방보훈병원

- 급성기 중증 질환에 대한 검사와 수술 실시, 권역별 거점병원 역할 수행

● 3차 중앙보훈병원

- 고난이도 중증질환, 전문진료센터 운영, 급성-재활-요양 융합형 진료체계 구축운영

산재의료 전달체계 추진계획

1. 추진배경

○ (수혜자 저조)

집중재활치료 대상자가 ' 22년 기준 41,785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의 특진의회는 4.3%(1,795명)로 매우 저조

* 대상자: 29,797명(' 19년) → 30,996명(' 20년) → 35,485명(' 21년) → 41,785명(' 22년)

** 재활특진: 1,778명(' 19년) → 1,325명(' 20년) → 1,484명(' 21년) → 1,795명(' 22년)

2) 문제점

○(전달체계 미비) 집중재활치료 대상자가 조기에 재활인증의료기관에서 집중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

○ (의료전달체계 부재) 집중재활치료 대상자에 대한 재활특진서비스 DM·문자 안내 등 지사 직원의 대상자 발굴 노력에만 의존

○ (조기 집중재활치료 효과) 연구용역 결과 집중재활치료 시 집중치료 대상기간이내의 환자가 기준기간을 초과한 환자에 비하여 요양일수는 짧고(8일~27일), 무장해율(3.3%~4.4%) 및 직업복귀율(6.18%~18%)이 높아 적기에 치료 시 더 큰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음

집중재활치료 기간 비교

구분	관절·척추질환자		뇌혈관질환자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총 요양일수(일)	86.93	95.66	100.25	127.93
무장해율(%)	27.30	22.84	43.84	40.48
직업복귀율(%)	49.83	43.65	33.56	15.48

* 자료: 근로복지공단(' 22.12.) 「재활특진 효과성 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 발췌

3) 개선사항

○ (소견서 제출 제도화) 집중재활치료 대상자 중 일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이거나 전문재활치료를 받고 있지 아니한 경우 진료계획서 제출 시 재활특진 소견서 제출

4) 기대효과

- (기대효과) 요양 초기부터 전문재활치료 제공으로 산재환자의 신체기능 회복과 장애 최소화 등 원활한 직업복귀 촉진

□ 산재의료전달체계 추진 전략

1. 개요

산업재해 이후 체계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산재환자들이 민간병원에 분산되어 치료 연속성과 직업복귀가 지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재병원을 중심으로 한 재활치료 의료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함.

2. 핵심 추진전략

① 법령 및 지침 개정

- 재활치료는 공단이 지정한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등) 개정

② 단계별 지정진료제 도입

- 급성기 치료 ()주 경과 후 재활 필요 기준 충족 시 공단 산재병원 자동 지정 및 특진(전원)

③ 전산 기반 전원 관리체계 구축

- 전자 요양계획 공유, 자동 전원 알림 및 승인 시스템 포함한 플랫폼 구축

④ 재활인프라 확충

- 공단 산재병원 내 재활의학과 의료진 및 치료사 전문인력 확보
- 직업복귀 특화프로그램 및 사회심리재활, 사회복귀 프로그램 강화

3. 기대효과

- 산재환자의 재활치료 질 향상 및 직업복귀율 제고
- 산재보험 재정 효율성 확보
- 산재병원의 보험자병원 역할 및 공공 재활의료 기능 강화

출연금 확대를 위한 법제화 방안

산재병원은 매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 의하여 예산 편성이 되고 있으나 노후시설, 노후장비, 본부 운영비, 공공의료의 수익성 낮은 사업으로 턱없이 부족한 예산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출연금 확대 및 법제화가 필요함.

산재 출연기금 예산 확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금 법제화 방안

- 산재 보험자병원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 수행에 따른 안정적 예산지원 필요성
-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후 장비, 시설 개선 필요
- 산재 출연기금 확대 및 출연기금 법제화를 위한 정부 설득 방안
- (개선방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에 공단에서 설치·운영하는 산재보험시설에 대한 기금 출연 명시*

- 제9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금 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8 이상을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 3호에 해당하는 () 의료사업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 근거 명시 필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운영계획(근로복지공단)

3.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 수입 및 지출 총괄

☐ 수 입

○ '25년도 수입은 16조 2,694억원

- 보험료 등 자체수입과 정부내부수입 증가

* 여유자금 회수(7조 1,487억원)를 포함한 총 운용규모는 23조 4,181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4계 획(A)	'25계 획(B)	증 감 (B-A)	%
총 계(A+B+C)	20,295,013	23,418,118	3,123,105	15.4
수입계(A+B)	12,405,530	16,269,446	3,863,916	31.1
☐ 자체수입(A)	10,738,068	11,185,797	447,729	4.2
○ 산재보험료	9,418,508	9,834,968	416,460	4.4
○ 재산수입·음자회수 등	1,319,560	1,350,829	31,269	2.4
☐ 정부내부수입(B)	1,667,462	5,083,649	3,416,187	204.9
○ 일반회계 전입금	21,300	21,300	0	0.0
○ 공자기금예탁원금회수	1,550,090	4,850,090	3,300,000	212.9
○ 공자기금 예탁이자수입	96,072	212,259	116,187	120.9
☐ 여유자금회수(C)	7,889,483	7,148,672	△ 740,811	△ 9.4

☐ 지 출

○ '25년도 지출은 14조 8,676억원

* 여유자금 운용(8조 5,505억원)을 포함한 총 운용규모는 23조 4,181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4계 획(A)	'25계 획(B)	증 감 (B-A)	%
총 계(A+B+C)	20,295,013	23,418,118	3,123,105	15.4
지출계(A+B)	13,122,242	14,867,591	1,745,349	13.3
☐ 지출(A)	9,822,242	10,017,591	195,349	2.0
○ 산재보험사업	8,099,762	8,276,355	176,593	2.2
○ 산재예방사업	1,285,544	1,293,156	7,612	0.6
○ 기금운영비	436,936	448,080	11,144	2.6
☐ 정부내부지출(B)	3,300,000	4,850,000	1,550,000	47.0
○ 공자기금예탁금	3,300,000	4,850,000	1,550,000	47.0
☐ 여유자금운용(C)	7,172,771	8,550,527	1,377,756	19.2

2) 주요 사업별 계획

① 산재보험 지원

- ❖ 산재보험 전 과정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산재근로자의 신속·공정한 보호
- ❖ 산재근로자 직업·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 및 의료 인프라 확충

<산재보험급여 8조 43억원>

○ 요양급여: 1조 4,670억원

-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하는 경우 치료비 등 지급
- * ('24년) 356,304명 → ('25년) 343,174명

○ 휴업급여: 2조 1,183억원

-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지급
- * ('24년) 191,477명 → ('25년) 188,913명

○ 장해급여: 2조 7,813억원

-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 제1급~14급 판정자에게 지급
- * 연금: 329일분(1급)~138일분(7급), 일시금: 1,474일분(1급)~55일분(14급)
- * ('24년) 111,072명 → ('25년) 111,305명

○ 유족급여: 1조 309억원

- 업무상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
- * 연금: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일)의 52~67%, 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 * ('24년) 37,107명 → ('25년) 37,788명

○ 간병급여: 506억원

-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1~2급 중 간병급여 대상자에게 지급
- * 상사: 전문 44,760원, 가족/기타 41,170원, 수사: 전문 29,840원, 가족/기타 27,450원
- * ('24년) 4,673명 → ('25년) 4,474명

○ 상병보상연금: 1,418억원

- 2년 이상 요양중인 중증요양상태등급 제1급 ~ 제3급 해당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평균임금 329일분 ~ 257일분 지급

* ('24년) 3,221명 → ('25년) 2,923명

○ 장례비: 390억원

- 업무상 사망에 대하여 실제 장례를 행한 자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 '24년 최고 18,125천원, 최저 13,053천원

* ('24년) 2,961명 → ('25년) 2,462명

○ 직업재활급여: 279억원

- 요양종결 이후 산재보험법상 장애등급 1~12급 판정을 받거나 판정을 받을 것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 등을 위해 지급

* ('24년) 4,089명 → ('25년) 4,213명

○ 진폐연금: 3,475억원

- 요양하거나 진폐장애 판정을 받은 진폐노동자에게 진폐보상연금, 진폐로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 지급

*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최저임금의 60%)과 진폐장애연금(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평균임금의 2일 ~ 11일분)을 합한 금액을 지급, 진폐유족연금은 사망전 진폐보상연금 금액을 지급(유족보상연금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24년) 14,759명 → ('25년) 14,731명

< '25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4계획(A)	'25계획(B)	증 감 (B-A)	%
□ 산재보험급여	7,876,091	8,004,325	128,234	1.6
○ 요양급여	1,540,630	1,467,065	△73,565	△4.8
○ 휴업급여	2,143,817	2,118,281	△25,536	△1.2
○ 장애급여	2,646,368	2,781,327	134,959	5.1
○ 유족급여	981,157	1,030,880	49,723	5.1
○ 간병급여	48,601	50,561	1,960	4.0
○ 상병보상연금	129,565	141,847	12,282	9.5
○ 장례비	44,937	38,978	△5,959	△13.3
○ 직업재활급여	26,760	27,913	1,153	4.3
○ 진폐연금	314,256	347,473	33,217	10.6

<산재근로자 재활 및 의료사업 지원>

○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779억원

-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76,660명, 602억원),
사회심리재활 지원(6,433명, 25억원),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1,427명, 32억원),
산재근로자 직업복귀통합지원시스템 운영(5억원) 등 전년수준
- 직장복귀지원 117억원
 - * 맞춤형서비스지원 예산 90억 통합 편성
-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지원 순감 4억원
 - * 지출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 폐지

○ 연구기관 및 케어센터지원: 127억원

- 재활공학연구소 48억원
 - *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19억원, 재료비 29억원
- 직업환경연구원 46억원
 - *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38억원, 노후연구장비 교체(4점) 8억원
- 케어센터 2개소 33억원

○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98억원

- 의료기관 평가(3억원), 산재보험 부정수급관리(12억원),
업무상 재해조사판정(29억원), 출퇴근재해보호지원(54억원) 전년 동

○ 산재병원지원: 797억원

- 산재병원 운영지원 87억원
: 재활전문센터 42억원
산재병원 본부 운영비 지원 45억원

- 산재병원 시설장비지원 73억원
: 노후안전시설개보수 35억원*, 의료장비현대화 38억원

- * 동해병원 시설 개선공사비(21억원)
순천병원 응급대기시설 개선공사비(14억원)

- 울산산재병원신축지원 636억원
* 5년차 공사비(585억원) 및 정보화 구축비(51억원)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43억원

- 산재근로자와 가족에게 학자금, 혼례비, 장례비, 요양비 등 대부
- * 생활안정자금 : 가구당 2,000만원 한도, 연리 1.25%, 지원대상 1,511명
- * 물량: ('24년) 1,511명 → ('25년) 1,511명

< '25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4계획(A)	'25계획(B)	증 감 (B-A)	
				%
계	147,949	194,312	46,363	31.3
○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78,384	77,937	△447	△0.6
○ 연구기관및케어센터지원	12,747	12,665	△82	△0.6
○ 요양관리	9,757	9,757	0	0.0
○ 산재병원지원	32,762	79,654	46,892	143.1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4,299	14,299	0	0.0

2025년 산재기금 운영계획 (산재병원 지원)

사 업 명

(5) 산재병원지원(4054-3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재해보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보건정책관		080	08E
명칭	보험및예방기금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000	4054	350
명칭	산재보험	산재의료사업지원	산재병원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	2024년 계획		2025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산재병원지원	32,421	32,762	32,762	79,654	79,654	46,892	143.1

4. 사업목적

- (노후시설 개선)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산재병원 노후시설 개·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요양환경 구축
- (장비현대화) 내구연한이 경과한 의료장비 교체를 통해 정확한 진단 등 산재근로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
- (재활전문센터) 민간이 기피하는 등 낮은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산재근로자 재활치료 골든타임에 집중재활프로그램 제공, 신체기능 손실 최소화를 통한 조기 직업복귀 지원 등 산재의료재활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7개 재활전문센터의 운영비 지원
- (산재병원본부) 산재병원 운영재원은 자체 진료수익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비수익 기관으로 산재의료 정책 수립 및 경영 지원하는 산재병원본부의 운영비 지원

- (울산병원 건립) 산재의료재활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울산지역 공공병원 건립사업
- (전북권 산재병원) 산재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전북 지역의 산재전문병원 설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용역 실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제11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1.27, 2015.1.20>

1.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 5의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요양 및 재활
 - 5의3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검정 및 보급
 - 5의4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
 - 5의5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
 6.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제5호·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에 딸린 사업
- ② 공단은 제1항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2015.1.20>
-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보험급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27>
- ④ 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0.1.27>
-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② 추진경위

- '04. 07. 고용노동부 『재활전문산재병원 건립계획』
- '06. 03. 고용노동부 『산재환자 요양과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한 산재의료관리원 역할강화방안('06~'10년)』
- '06. 05. 고용노동부 『대구재활전문병원 건립추진계획안』
- '11. 12. 고용노동부 『산재병원 중장기 발전방안』
- '12. 4. 고용노동부 『제3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12~'14)』
- '13. 9. 고용노동부 『산재병원 중장기 발전방안』
- '15. 7. 고용노동부 『산재병원 중장기 발전방안 세부실행계획』
- '06 ~ '22 고용노동부 『제1~5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
- '18. 4. 고용노동부 『산재병원 중장기('18~'22) 발전방안』
- '21. 11. 근로복지공단 『의료사업 중장기('22~'26년) 발전방안 수립』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2,071억원(울산병원 건립)
- 사업기간 : '9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29,982	54,820	32,431	32,762	79,654

- 기타: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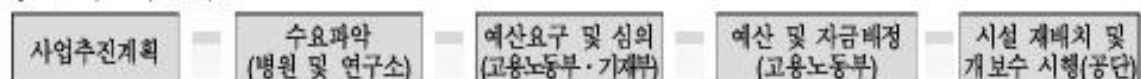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위탁)
- 사업 수혜자 : 산재노동자 및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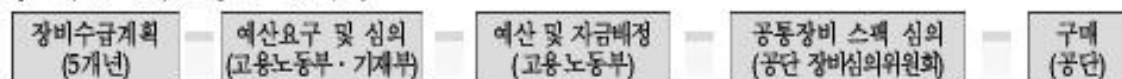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계획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출연	근로복지공단	79,654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제3항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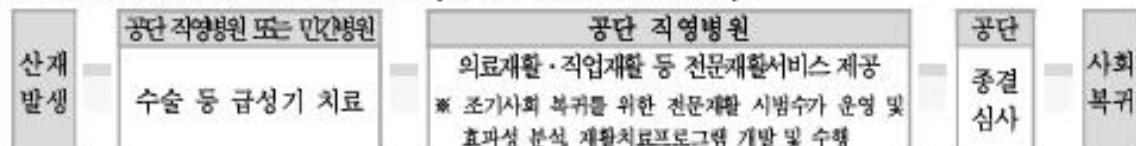
◇ 노후 시설개선



◇ 의료·재활장비 현대화



◇ 산재재활요양기관 역할강화(전문재활서비스 제공)



산재기금 과거 편성 이력사항

1. 세부 내역

(백만원)

구분	'23년 결산	'24년 본예산(A)	'25년 본예산(B)	증 감 (B-A)	%
☐ 산재병원지원	32,421	32,762	79,654	46,892	143.1
① 노후시설개선	5,258	1,686	3,472	1,786	105.9
- 노후안전시설 (대전) 5,258		- 노후안전시설 (동해) 593 - 응급대기시설 (태백) 1,093	- 노후안전시설 (동해) 2,072 - 응급대기시설 (순천) 1,400		
② 장비현대화	3,784	3,784	3,812	28	0.7
- 의료장비 22점		- 의료장비 17점	- 의료장비 8점		
③ 재활전문센터	4,491	6,938	4,228	△2,710	△39.1
- 수익 10,587 - 비용 17,981 * 자체충당 2,903		- 수익 11,769 - 비용 18,610 * 자체충당 2,903 - 외래재활센터 3,000	-수익 12,077 -비용 19,215 *자체충당 2,910		
④ 산재병원본부	4,535	4,473	4,518	45	1.0
- 운영비 4,535		- 운영비 4,473	- 운영비 4,518		
⑤ 울산병원건립	14,353	15,681	63,624	47,943	305.7
- 공사비 및 정보시스템 건축비 등 14,353		- 공사비 및 정보시스템 건축비 등 15,681	- 공사비 및 정보시스템 건축비 등 63,624		
⑥ 전북권 산재병원	-	200	-	-	-
		- 전북권 산재병원 신축 기초조사업구용역			
☐ 비목(합계)	32,421	32,762	79,654	46,892	143.1
○ 일반출연금(350)	32,421	32,562	79,654	47,092	144.6
- 사업출연금(350-02)	32,421	32,562	79,654	47,092	144.6
○ 연구용역비(260)	-	200	-	△200	순감
- 일반연구비(260-01)	-	200	-	△200	순감

2. 예산반영 추이

(백만원)

구분	'20예산		'21예산		'22예산		'23예산		'24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 정부안(A)	22,819	28,769	36,492	29,982	54,820	54,820	94,531	32,431	29,562
☐ 국회증감(B, +a)	5,950	-	△6,510	-	-	-	△62,100	-	3,200
☐ 최종(A+B)	28,769	28,769	29,982	29,982	54,820	54,820	32,431	32,431	32,762

3. 최근 5년간 국회반영 증감내역(상세)

- ('20년) 내구연한 3년이상 도과한 의료장비 현대화 위한 3,600백만원, 산재병원 미설치 지역에 재활서비스 특화 외래센터(광주) 설립 위한 2,350백만원 증액
- ('21년) 울산병원 건립의 착공 및 준공 일정이 조정될 수 있는 점, 설계 기간이 300일 이상이 소요되는 점, '20년 예산 40억원 이월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공사비, 감리비 일부와 예비비 총 6,510백만원 감액
- ('23년) 문화재조사 완료시기('22.7월), 중간설계 총사업비 조정 장기화, 부지조성 공사 일정 변경 등을 감안하여 '23년 공사 금액 62,100백만원 감액
- ('24년) 구미 외래재활센터 건립 3,000백만원 및 전북권 산재병원 기초조사 연구용역 사업 200백만원 증액

4. 최근 3년간 외부 지적사항(국회, 감사원, 언론 등) 및 평가결과

○ (환노위 '21회계연도 결산심사, '22년)

(지적내용) 산재병원 본부운영지원 사업 예산을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로 이관 검토 필요
(조치결과) 재정당국과의 협의 결과 기획재정부 내 운영비와 사업비 간 예산이관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산재병원 본부' 운영 지원 사업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유지

○ (환노위 '22회계연도 결산심사, '23년)

(지적내용) 울산병원 건립 사업 예산 실집행 부진으로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공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조치결과) 시공사의 공정 계획과 이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철저한 공정 관리로 현재 계획에 따라 원활히 사업 추진 중('26년 개원 예정)

○ (국정감사, '20~'22년)

(지적내용) 산재병원의 의료장비 노후화에 대한 대책 필요
(조치결과) 의료장비 적기 교체를 위한 추가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과 함께 의료장비 유지보수 관리 철저 도모



2026년 산재출연기금 요구안

- ('26년 1,677억원 요청) 노후시설 개선 169억, 장비현대화 137억, 울산병원 건립 및 운영비 1,279억, 본부운영비 등 87억, 정보화 5억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지출한도 내	지출한도 외	우선순위
○산재병원지원	167,661	102,326	65,335	
- 노후시설개선	16,873	5,786	11,087	
① 동해병원 3차년도 공사비	8,855	2,759	6,096	③
② 응급대기시설 개선 공사(순천병원)	3,027	3,027		
④ 대전병원 노후 외벽 개선 공사	1,660		1,660	
⑤ 응급대기시설(태백병원 1년차 설계비)	285		285	
⑥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시설 개선	3,046		3,046	
- 장비현대화	13,687	3,812	9,875	
① 의료장비(14점) / (46점)	12,443	3,717	8,726	
② 재활장비(1점) / (7점)	1,244	95	1,149	
- 재활전문센터	4,228	4,228		
- 산재병원본부	4,518	4,518		
- 울산병원건립	104,658	83,532	21,126	
- 울산병원 운영 지원	23,247		23,247	
① 개원초기 수지차 보전	15,483		15,483	①
② 준공 후 지방세	2,544		2,544	
③ 의료진 응급대기시설 임차비	5,220		5,220	
- 차세대EMR구축	450	450		②

울산병원 안정적 운영방안

울산병원은 산재 보험자 병원의 역할과 울산시 지역사회 요구도를 반영한 지역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는데 많은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됨.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원 초기 운영비 지원 및 울산병원의 방향성에 따른 시설, 직제, 인력구성이 필요함.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개원 준비 건

□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조직도 및 인력 운영계획

- 울산병원의 역할과 특성을 고려한 조직도 직제 편성
-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한 각 직렬별 직급/인원
- 업무수행/역할을 고려한 직렬별 비율에 따른 직급/인원

□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안정적 운영방안

- 울산광역시 공공의료 요구도를 고려한 추진 사업
- 울산병원의 진료 특화 및 환자 유입 방안
- 일,가정 적응 재활훈련센터 및 연구사업 운영계획
- 울산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필요성
-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산재/건보 등 환자 구성군 진료계획 방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건

□ 직렬 및 직급별 정원(안)-최초계획

직군	직렬	합계	별정직	직급별						수석	연구	책임	전임	공무
				2급	3급	4급	5급	6급						
합계		585	56	9	23	51	63	326	1	1	2	4	49	
별정직	소계	56	56											
	병원장	1	1											
	의사	53	53											
	본부장	2	2											
행정직	소계	30		3	5	5	7	10						
	일반	26		3	4	5	6	8						
	전산	4			1		1	2						
의료직	소계	436		6	17	45	55	313						
	약사	6		1	1	4								
	간호사	227		2	10	18	22	175						
	방사선사	10		1	1	1	2	5						
	임상병리사	10		1	1	1	2	5						
	물리치료사	93		1	1	9	12	70						
	작업치료사	55			1	7	9	38						
	보건의료정보관리사	2				1		1						
	산업위생사	8			1	1	2	4						
	의지보조기사	10			1	1	2	6						
	사회복지사	6				1	2	3						
	임상심리사	2					1	1						
	언어재활사	2				1		1						
	치과위생사	4						4						
	의공기사	1					1							
기술기능직	기술	6			1	1	1	3						
연구직		8							1	1	2	4		
공무	소계	49											49	
	영양사	2											2	
	조리사	2											2	
	(야간)방사선사	2											2	
	(야간)임상병리사	2											2	
	(야간)원무	3											3	
	전기기계통신	6											6	
	재활지원	15											15	
	병동지원	3											3	
	시설미화원	10											10	
	시설경비원	2											2	
	청각사	2											2	

※ 단, 정원 확보 및 정부정책에 따라 울산병원 인력정원(안)은 변경될 수 있음

□ 인력(최근 변동자료)

○ 인력: 58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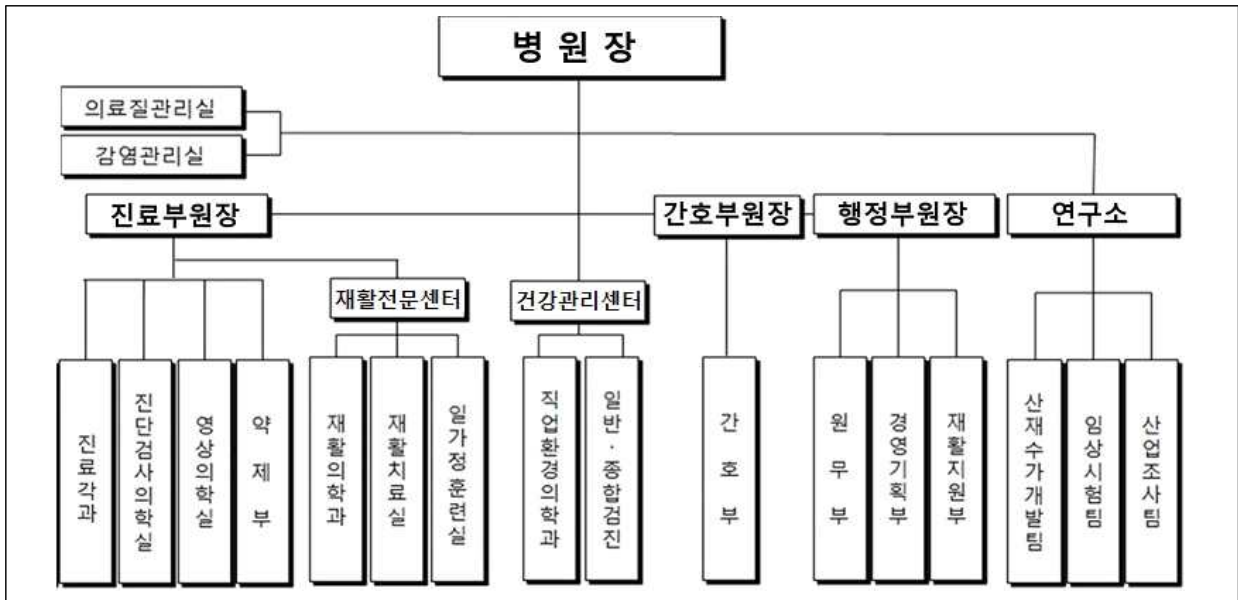
구분	계	별정직		행정직		의료직				기술·기능직	연구직	공무직
		병원장	의사	일반	전산	약사	간호사	물리작업	기타			
인원	585	1	53	31	4	6	228	110	71	6	8	67

○ 직렬별 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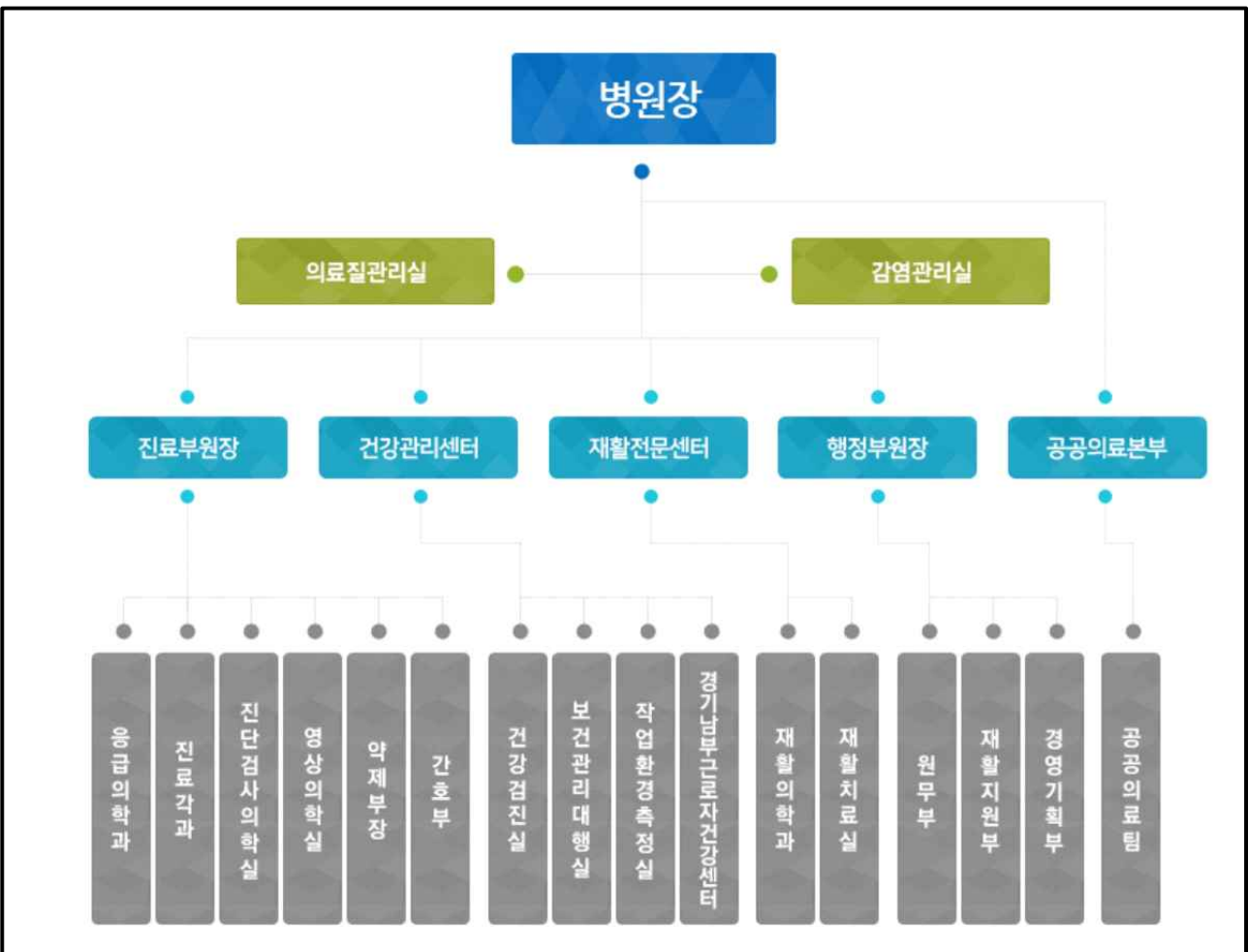
직군	직렬	합계	비고
합계		585	
별정직	소계	54	
	병원장	1	
	의사	53	
행정직	소계	35	
	일반	31	+4
	전산	4	
의료직	소계	415	
	약사	6	
	간호사	228	+1
	물리·작업치료사	110	-38
	방사선사	12	+2
	임상병리사	12	+2
	보건의료정보관리사	2	
	산업위생사	25	+17
	사회복지사	6	
	임상심리사	2	
	언어재활사	2	
	의지보조기기사	5	-5
	의공기사	1	
	치과위생사	4	
기술기능직	기술	6	
연구직		8	
공무직	소계	67	
	영양사	2	
	조리사	2	
	(야간)방사선사	2	
	(야간)임상병리사	2	
	(야간)원무	3	
	전기기계통신	6	
	재활지원	18	+3
	병동지원	10	+7
	시설미화원	18	+8
	시설경비원	2	
	청각사	2	

* 인력 585명은 기본운영 계획(안)으로 급변하는 의료시장(정부 의료개혁 방안 등) 반영을 위해 인력(직렬·직급 등) 재검토 중

□ 울산병원 조직도



□ 안산병원 조직도



지방의회 조례(안)

□ 구미시-구미외래재활센터 지원

구미시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에 따라 구미시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구미시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이하 “외래재활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지원내용)

- ①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는 외래재활센터 운영지원에 필요한 경우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임차료 이외의 운영비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역 근로자들의 전문 재활치료 확대를 위해 도로, 교통,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간) 지원기간은 외래재활센터 개소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액) 임차료 지원 금액은 고용노동부, 시 및 근로복지공단이 외래재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체결한 「외래재활센터 구미 유치 임차료 지원 협약서」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한) 시는 근로복지공단이 허위로 임차료를 청구하여 지급한 경우 환수조치 하거나 다음해 지원시 허위 청구된 금액을 감액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근로복지공단은 시가 외래재활센터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영주시-영주적십자병원 지원

가. 제안이유

- 영주적십자병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공공의료기능 역할과 의료취약계층 및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의료안전망 기능 수행을 위해 설립된 병원으로, 지역 주민의료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적자보전을 통하여 공공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원기준(안 제3조)
 - 병원 운영에 따른 적자 발생 시 대한적십자사와 공동 부담
 - 병원 부지 무상사용 및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한 사항
- 지원금액(안 제5조)
 - 연도별 운영적자가 5억원 미만일 경우 영주시가 전액 부담
 -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은 영주시가, 나머지는 대한 적십자사가 부담
 - 10억원 이상일 경우 적자금액의 50%를 부담

□ 정선군-군립병원 지원

□ -폐광지 공공의료 운영적자부담 연간 40억 달해

전국 최초로 군 단위 자치단체가 설립한 정선군립병원이 내달 2일 개원 9주년을 맞습니다. 정선군 사북읍에 소재한 정선군립병원은 지난 2016년 5월 2일 정선군이 민간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는 정선의료재단 군립병원으로 전환해 새로운 공공의료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9년간 정선군립병원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기적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선군 인구는 2023년 말 기준 3만 3000여명에 불과합니다. 병원이 소재한 정선 사북과 고한 일대로 좁히면 1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군에서 병원에 지원하는 연간 적자보전액은 개원 초기 10억원 안팎에서 지난 해 38억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올해는 4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구 3만명대의 군소 자치단체로서는 적지 않은 재정 지원을 감수하고 있는 겁니다.

□ 울산병원 건립 추진에 대한 검토의견 (주영수/전,국립중앙의료원장)

1) 지역의 산재수요(?)

- > 울산지역은 연간 사고 2,600명 + 질병 600명 정도 발생
- > 현재 산재의료시장은, 민간 지정의료기관(90%) + 산재병원(10%)

2) 직업병 연구(?)

- > 흔한 직업병으로는, 근골격계 질환이나 뇌심혈관계 질환
- > 새로운 혹은 희귀한 직업병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할...

3) 중증 산재환자에 대한 전문재활 치료(?)

- >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역할...

4) 국내 최초 직업병 연구-치료와 전문재활프로그램을 갖춘 거점형 공공산재병원(?)

- > 접근성 - 울산이라는 위치...
- > 진료역량 - 300병상이라는 규모...

5) 직업병 연구소, 재활보조기구 연구소(?)

-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활공학연구소의 역할...

6) 5년간 건립비 2,333억원 + 부지비용(?)

- > 아마도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 10개 산재병원의 기능개선은 hold 될 가능성이...

7)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직장·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전문장해진단 등(?)

- > 이미 근로복지공단 산하 산재병원들이 하고 있는 일...

8) 울산 산재병원과 울산 공공보건의료센터 공존방안(?)

- > 근로복지공단과 울산시의 운영권한과 책임의 구분 혹은 협력이 가능한지...
권한은 주장하고, 책임은 방기할 가능성...
- > 병원운영 적자 예상액(노동부 예상, 연 150억원) 해결방안은...
* 산재병원 건립 후 울산시에 매각... 울산시가 구매할 수 있을지...

붙임1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기관(175개소)

연번	시도	중진료권	기관명
1	서울	서울동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2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3			성심의료재단강동성심병원
4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5			의료법인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6		서울동북	삼육서울병원
7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8			노원을지대학교병원
9			의료법인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10			녹색병원
11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12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13		서울서남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14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15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
16			명지성모병원
17			홍익병원
18			부민병원
19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서울병원
20			서울특별시서남병원
21		서울서북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22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23	부산	부산동부	비에이치에스한서병원
24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좋은강안병원
25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26			동남권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27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해운대부민병원
28			의료법인 센텀의료재단 센텀종합병원
29		부산서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30			의료법인은성의료재단좋은삼선병원
31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
32			구포성심병원
33		부산중부	재단법인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메리놀병원
34			부산성모병원(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35			대동병원
36			부산광역시의료원
37			삼육부산병원
38			학교법인)동의병원
39			의료법인정화의료재단 봉생기념병원
40			좋은문화병원
41			의료법인 온그룹의료재단 온종합병원
42	대구	대구동북	대구파티마병원
43			계명대학교대구동산병원
44		대구서남	대구의료원
4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연번	시도	종진료권	기관명
46	인천	인천남부	(의)나사렛의료재단 나사렛국제병원
47			인천힘찬종합병원
48		인천동북	부평세림병원
49			한림병원
50			인천세종병원
51		인천서북	의료법인루가의료재단 나은병원
52			검단탑병원
53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54		인천중부	인천광역시의료원
55			의료법인 인천사랑병원
56			현대유비스병원
57			의료법인 성수의료재단 인천백병원
58	광주	광주광서	광주보훈병원
59			첨단종합병원
60			KS병원
61		광주동남	광주기독병원
62	대전	대전동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63			의료법인 영훈의료재단 대전선병원
64			대전한국병원
65		대전서부	학교법인 을지학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66			의료법인영훈의료재단 유성선병원
67	세종	세종	세종충남대학교병원
68	경기	고양권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69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70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71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72			의료법인우리의료재단김포우리병원
73			의료법인인봉의료재단뉴고려병원
74			의료법인성광의료재단일산차병원
75		남양주권	한양대학교구리병원
76			남양주 한양병원
77			현대병원
78		부천권	부천세종병원
79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80			광명성애병원
81			중앙대학교광명병원
82		성남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83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84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
85			강남병원
86			(의)영문의료재단 다보스병원
87			참조은 병원
88			성남시의료원
89		수원권	의료법인 녹산의료재단동수원병원
90			오산한국병원
91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92			의료법인 명인의료재단 화홍병원
93			의료법인 토마스의료재단 월스기념병원

연번	시도	중진료권	기관명
94		안산권	대아의료재단한도병원
95			의료법인 석경의료재단 센트럴병원
96			의료법인 남촌의료재단 시화병원
97			의료법인 플러스의료재단 단원병원
98		안양권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99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100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
101		의정부권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102			추병원
103			학교법인 을지학원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104		이천권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105		파주시	메디인병원
106		평택권	의료법인백송의료재단 굿모닝병원
107			의료법인 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
108		포천시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109	울산	울산동북	울산병원
110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정병원
111			의료법인 송은의료재단 울산시티병원
112		울산서남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
113	강원	강릉권	의료법인 강릉동인병원
114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
115		동해권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116		속초권	강원특별자치도속초의료원
117		속초권	속초보광병원
118		영월권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119		원주권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120		춘천권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121		춘천권	강원대학교병원
122	충북	제천권	의료법인 자산의료재단 제천서울병원
123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124		청주권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125			의료법인 인화재단 한국병원
126			청주성모병원
127			의료법인한마음의료재단하나병원
128			의료법인 정산의료재단 효성병원
129		충주권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130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131	충남	공주권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132		논산권	의료법인 백제병원
133		서산권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134		천안권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
135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136			아산충무병원
137		홍성권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138	전북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139			의료법인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
140		남원권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연번	시도	중진료권	기관명
141		익산시	익산병원
142		전주권	재단법인예수병원유지재단예수병원
143			의료법인영경의료재단전주병원
144			대자인병원
145		정읍권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정읍아산병원
146	전남	목포권	목포한국병원
147		순천권	의료법인목포구암의료재단 목포중앙병원
148			성가롤로병원
149		여수권	여수전남병원
150			여천전남병원
151		영광권	영광종합병원
152		해남권	의료법인행촌의료재단 해남종합병원
153	경북	경주권	동국대학교의과대학경주병원
154		구미권	차의과학대학교부속구미차병원
155			경상북도김천의료원
156			의료법인덕산의료재단김천제일병원
157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158		상주권	의료법인동춘의료재단문경제일병원
159		안동권	안동성소병원
160			의료법인안동 병원
161		포항권	포항성모병원
162			의료법인한성재단포항세명기독병원
163	경남	김해권	의료법인송인의료재단 김해복음병원
164		진주권	제일병원
165		창원권	창원파티마병원
166			창원한마음병원
167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168		통영권	의료법인 거봉 백병원
169			의료법인 대우의료재단대우병원
170	제주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171		제주시	제주한라병원
172			제주대학교병원
173			의료법인 헤인의료재단 한국병원
174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 중앙병원
175			한마음병원

※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은 충족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지정된 병원이 없음.

붙임 2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기간 : 2023. 3. 1. ~ 2026. 2. 28.]

지역	의료기관명
서울 (7)	국립재활원, 드림요양병원, 로이병원, 서울재활병원 청담병원 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 제니스병원
경기 (11)	국립교통재활병원, 로체스터재활병원, 린병원 마스터플러스병원, 분당베스트병원, 분당리스크재활병원 에스알씨(SRC)재활병원, 의료법인기상의료재단카이저병원 일산복음미래병원, 일산중심재활병원, 휴앤유병원
인천 (3)	미추홀병원, 브래덤재활병원, 서송병원
충북 (4)	씨엔씨푸른병원, 아이엠재활병원 의료법인송암의료재단마이크로요양병원* 첼로병원
충남 (2)	천안재활병원, SG삼성조은병원
대전 (4)	다빈치병원, 사회복지법인 성화 대전재활병원 의료법인 밝은마음의료재단 위크런병원 의료법인 리노의료재단 유성웰니스재활병원
대구 (5)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 남산병원 대구보건대학교병원, 의료법인상보의료재단 대구경상병원 의료법인해정의료재단 더좋은병원
경북 (2)	의료법인 갑을의료재단 갑을구미병원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 북주회복병원
경남 (3)	예손재활의학과병원, 의료법인희원 래봄병원, 희연병원
부산 (6)	(재)한·호기독교선교회 맥켄지일신기독병원 동아대학교대신요양병원*, 위크재활의학과병원 의료법인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파크사이드재활의학과병원,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강원 (1)	강원도 재활병원
전북 (1)	드림솔병원
광주 (3)	광주365재활병원, 우암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제주 (1)	제주권역재활병원

* 요양병원은 지정기준 충족을 통보받은 다음 날로부터 180일 내에 병
원으로 종별 전환 후 지정 예정